

공시송달공고

명동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 (행위의 금지)를 위반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 및 벌점처분)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제 목 :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
2. 법적근거 :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
3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허가번호	성명	점용위치	주소	비고(처분내용)
1	중앙로-55-B	이*재	명동8길 52	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1길	영업정지10일(기간:201-1210) 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2	중앙로-44-B	김*자	명동8길 40	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60길	영업정지10일(기간:201-1210) 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3	명동길-27-A	신*순	명동길 26	전라남도 순천시 장천길	영업정지10일(기간:201-1210) 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4	명동길-25-B	이*민	명동길 26	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67	영업정지10일(기간:201-1210) 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
4. 공고기간 : 2023. 12. 01. ~ 2023. 12. 15.(14일간)
5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6. 공고내용

-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명동 허가제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실명제 허가 조건」 11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」 제9조(행위의 금지)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또한, **동일사항 4회 위반 및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 120점 이상 시 즉시 허가취소,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5회(동일한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은 3회) 이상이거나 누적벌점 100점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이 제한**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(☎02-3396-60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2023. 12. 01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